

계절학기규정

1997.03.01.제정	1997.06.18.일부개정	1997.08.07.일부개정	1997.12.00.일부개정
1998.06.00.일부개정	1999.03.01.일부개정	1999.06.00.일부개정	2010.01.01.일부개정
2001.03.01.일부개정	2002.11.01.일부개정	2006.03.01.일부개정	2011.04.18.일부개정
2012.08.01.일부개정	2017.12.21.일부개정	2018.07.01.일부개정	2019.12.09.일부개정
2020.02.26.일부개정	2020.07.01.일부개정	2021.06.01.일부개정	2022.04.27.일부개정
<u>2023.01.02.폐지</u>			

<학사관리팀>

제1조(개설목적) 계절학기는 학업보완 및 계속 교육의 차원에서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설시기 및 수업일수) ① 계절학기는 여름 및 겨울방학 중에 개설한다.

② 계절학기는 4주이내로 개설하며, 1학점당 15시간이상 수업하여야 한다.

제3조(개설교과목) 계절학기의 개설과목은 전체 교육과정표에 따라 여름학기에는 제1학기 개설 과목 중에서, 겨울학기에는 제2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육과정 이수 상 필요한 경우(폐강 과목 포함)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와 상관없이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,2022.4.27.)

제4조(개설절차) ① 각 학장은 개설 4주 전에 개설교과목, 담당교수, 강의계획서 등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, 교무처장은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.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)

② (삭제)

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절학기에 특정교과목을 개설토록 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., 2012.8.1., 2018.7.1., 2021.6.1.)

④ 각 학장은 제1항의 교과목 제출 시 사전에 학생들의 개설희망과목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강신청/등록 및 폐강) ① 계절학기는 학칙에서 정한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, 재학 중 계절학기에서 취득 가능한 최대 학점은 총24학점이다. 단, 계절학기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이수하는 실습학기제 과목의 학점은 계절학기에서 이수 가능한 최대 학점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17.12.21., 2020.2.26.)

② 폐강 기준은 [별표1]에 따른다. (개정 2017.12.21., 2020.2.26.,2022.4.27.)

③ 수강 신청한 과목은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.

④ (삭제)

⑤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(삭제)

⑦ 삭제 <2006.3.1.>

⑧ 삭제 <2017.12.21.>

⑨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 재학생으로서 소속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교 학생에 준하여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, 기타 수강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. (신설 2006.3.1.)

제6조(성적평가) ① 학업성적평가는 일반학기 성적평가기준에 준한다.

②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당해학기의 학사경고, 유급, 장학금지급 등과 무관하며, 개설한 기간이 포함된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(하계, 동계)으로 표기하여 별도 관리하며, 계절학기 평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 처리한다.

제7조(강의료) 계절학기 강의료는 「강의료규정」에서 정한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 (개정 2020.7.1.,2022.4.27.)

제7조의 2(등록금) ① 계절학기 학점 당 등록금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 단, 미래융합대학, 두잉학부 및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소속 학생은 정규학기의 학점 당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4.27.)

② 수업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하거나 [별표1]에 따라 폐강 되었을 경우 기 납입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하며, 대상 학생은 [별지 제1호 서식]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업개시일부 터는 수강 취소를 할 수 없다. (신설 2022.4.27.)

[본조 신설 2020.7.1.]

제8조(기타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또는 수업및학사운영규정에 의한다. (개정 2019.12.9.)

부 칙

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다만,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월 2일부터 폐지한다.

[별표1] 폐강 기준 및 정원 (신설 2022.4.27.)

구분	대면수업		원격수업		비고
	폐강 인원	정원	폐강 인원	정원	
전공과목	15명 미만	40명	15명 미만	80명	
교양과목	15명 미만	40명	15명 미만	80명	
교양과목(외국어)	15명 미만	30명	15명 미만	60명	

※ 폐강 인원은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

※ 개설 과목 특성상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30%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계절학기 등록금(반환) 신청서 (신설 2022.4.27.)

계절학기 등록금(반환) 신청서			
소 속	대학		학과(전공)
학 번		성 명	
()학년도 ()계절학기 수강신청 내역			
과목코드번호	분 반	교과목명	학 점
수강 취소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과목 폐강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강 취소		
반환 계좌	<input type="checkbox"/> T-UP에 등록된 계좌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계좌(통장 사본 첨부)
	은행명		예금주
	계좌번호		
년 월 일			
신청인:			(서명/인)
동명대학교 총장 귀하			

※ 반환 기준

1. 수업개시 전일: 수업료 전액
2. 수업개시일부터: 수강취소(반환) 불가